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4 특허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윤오연, 권슬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제갈현
판 결 선 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등이 특허권을 가지는 'C'에 관한 특허(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전용실시권 계약이 만료되었고, 더 이상 위 특허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0.경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에서 제조하는 세정제인 'H'의 용기와 포장지에 특허번호(D)를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특허를 보유한 B은 2014. 8. 18. 피고인이 운영하는 G와, 'B이 이 사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공급하는 I, H 제품 및 제품군(이온화칼슘 세척제)에 관한 국내외 총판권을 G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라 B은 G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G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J 경 특허등록원부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등록의무자 : B', '전용실시권자 : G', '등록원인 : 설정계약', '기간 : 2014. 12. 3.부터 2019. 12. 2.까지'로 하는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실, ③ 이 사건 총판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B과 G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위 총판계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파기된 사실, ④ 그후 B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용실시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특허등록원부에 G가 보유한 전용실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⑤ (B 측은 이 사건 총판계약이 파기되면서 B이 G에 부여한 전용실시권 역시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전용실시권의 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않은 이상 등록된 기간 동안(2014. 12. 3.부터 2019. 12. 2.까지) G의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2019. 6. 20.경 G는 여전히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따라서 B 측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이 사건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H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용기와 포장지에 이 사건 특허번호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G가 이 사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서 그 특허 기술이 사용된 물건에 특허번호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특허법 제224조 제1호의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가 B으로부터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던 H 제품 재고분을 다른 제품 구매고객에게 샘플로 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G가 B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제조한 H의 용기와 포장지에 이 사건 특허를 허위표시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03

판사 김혜성 _____